

☎ 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(내선번호)/전송(02)793-8702
의무법제국장 김상구(6573) /의무팀장 이은혜(6540)/ 탐원 박주영(6542)/E-mail:juuuuuuuuu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0641-08515호

시행일자 2024. 10. 31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「제1급감염병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대응지침」 개정 알림(질병관리청)

1.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질병관리청 신종감염병대응과-882(2024.10.30.)

3. 질병관리청에서는 국외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의 임상·역학적 특성을 반영하여 감시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한 「제1급감염병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대응지침」 개정판(붙임#2)을 다음과 같이 우리협회로 안내해온 바,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(다운로드 경로)

- 질병관리청 누리집(www.kdca.go.kr): 알림·자료→법령·지침·서식→지침
- 감염병포털누리집(www.dportal.kdca.go.kr): 감염병정보→감염병지침
-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www.kma.org): 공지·뉴스→코로나19등 감염병 종합게시판

○ 주요 개정사항

구분	개정 전	개정 후
사례정의	○ (확진환자) 임상증상 있고, 병원체 감염 확인된 사람	○ (확진환자) 진단·검사기준에 따라 병원체 감염 확인된 사람
	○ (의사환자) 역학적 연관성 확인되고, 발열을 동반한 급성하부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	○ (의사환자) ①역학적 연관성 확인되고 관련 임상증상* 있거나 공중보건학적 검사가 필요한 사람, ②역학적 연관성 불충분하더라도 역학조사관 판단에 따라 분류하여 검사 가능** * 眼증상(결막염, 안구충혈, 안구불편감 등), 발열, 기침, 인후통, 근육통 등 (발열 및 호흡기증상 없이 안과 증상만 있어도 의사환자 분류 필요) ** 예 인플루엔자 A 양성이나 H1, H3가 아닐 경우

	○ (조사대상 유증상자) 역학적 연관성 확인되고, 호흡기 증상 있는 사람	< 의사환자에 통합 >
무증상 확진환자 관리	○ (조사시기) 증상발생일 기준 설정 * 감염원 조사: 증상발생일 10일 전, 접촉자 조사: 증상발생일 1일 전	○ (조사시기) 무증상 확진환자의 경우, 검체 채취일 기준 동일 기간 조사 * 감염원 조사: 검체 채취일 10일 전, 접촉자 조사: 역학조사관 판단에 따라 가족 등 밀접접촉자 조사 및 관리 가능
진단검사 검체	○ (유전자검출검사 검체) 구인두도말, 비인두도말 등	○ (유전자검출검사 검체) 구인두도말, 비인두도말, 안점막도말 등

※ 붙임

1. 질병관리청 공문 1부.
2. 「제1급감염병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대응지침」('24.10.)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(각과개원의협의회장),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장,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